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
----------	-----

2018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9월 12일, 송도호 의원 외 2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적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경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적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관련(안 제6조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고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는 등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범주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11.11.29)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6조제2항과 같이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등에 관한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표지 규격 등의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원 시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기

감면(할인)¹⁾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그러나 안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 현재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없지만,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인 우면산터널(서초구↔과천시), 용마산터널(중랑구↔구리시), 강남순환도로(광명시↔과천시)에 대해 통행요금²⁾을 감면할 경우 협약에 따라 감면금액³⁾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3개 유료도로의 경우 시점과 종점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출근시간 통행량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약 34% 더 많아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의 혜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개 유료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대 상	유 입(A) (경기도→서울시)	유 출(B) (서울시→경기도)	A - B
계		23,341	15,439	7,902
우면산터널	출근시간 (06~09시)	6,966	5,311	1,655
용마터널		4,060	2,246	1,814
강남순환고속도로		12,315	7,882	4,433

한편,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

-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2) 우면산터널 통행료 2,500원, 용마산터널 통행료 1,500원, 강남순환도로 통행료 3,200원(요금소 2개소)
- 3) 통행 자동차 중 감면 대상(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을 0.06% 적용시 연간 64백만원

2호에 “경기도 유료도로⁴⁾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점과 종점이 모두 경기도 내에 있고 실제 「유료도로법 시행령⁵⁾」을 준용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하이패스를 통과)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고 임의조항으로써 조례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부서(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의 예산반영, 감면 시행에 대한 협의 및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서울시 유료도로 현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이후 남은(최대 2년 이내)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있음.

4)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 3개 도로가 있으며, 시점과 종점이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음

5)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참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시 규격>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5】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p>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p>	<p>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달라 이를 수정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조례에서 기 감면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8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달라 이를 수정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조례에서 기 감면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 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실효성이 낮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대신 기 시행하고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제2호)
-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로 한다.

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으로 한다.

안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u>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에 따른다</p> <p>③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5조 또는 「<u>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u>」 제38조 또는 「<u>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u>」 제79조의7에 따른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시장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u></p> <p>2. <u>시장이 관리하는 유료 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u></p> <p>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5조에 따른다.</p> <p>③ ~ 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시장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u></p> <p>2. <u>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u></p> <p>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⑥ <u>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u>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에 따른다</p> <p>③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5조에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u>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u> 2. <u>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